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송진영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 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 라. 실태조사(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2월 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blue6017@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립등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